## 2.환경질의 쾌적성

## 1) 신·재생에너지

■ 신·재생에너지				
1. 정의	총전력 생산량 중 신·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			
2. 측정단위	백분율(%)	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	
- <del>목</del> 적	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,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,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,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	
- 고려 요소	1.신에너지	- 신·재생에너지 사용기구수 - 작년대비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증·감 -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중·장 기계획		

## 2) 생활 폐기물

■ 생활폐기물			
 1. 정의	연간 지자체 수거 폐기물량		
2. 측정단위	천 톤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
- 목적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
- 고려 요소	<ul> <li>폐기물: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 일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</li> <li>생활폐기물: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</li> <li>사업장폐기물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・진동 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</li> <li>지정폐기물: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・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</li> <li>의료폐기물: 보건・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・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(摘出物),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・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</li> </ul>	- 작년대비 폐기물량의 증·감 - 폐기물 관련 중·장기계 획	